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식품·원산지·축산물 분야 주요 위반 사례

본 안내문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한 식품·원산지·농축수산물 분야의 주요 위반사항을 정리 한 것입니다. 안내된 내용을 확인 하셔서 위법 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형사 및 행정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원산지 분야 주요 위반사례

원산지표시법	위반사례	벌칙
제5조 원산지표시	원산지 미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제6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표시 혼동 목적으로 손상, 변경	
제8조 영수증 등의 비치	원산지 기재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6개월 보관 미실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은?

원산지표시 대상 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전열하는 모든 사람

음식점(일반,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납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축산물분야 주요 위반사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례	비고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냉장축산물 냉동축산물로 보존·유통	
	기준·규격 위반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제8조 위생관리기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2조 영업의 허가	무허가 영업(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요사항 변경허가 미이행	
제24조 영업의 신고	미신고 영업(식육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 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축산물운반업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포장일자, 유통기한 등 일부 또는 전부 거짓 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생산·작업기록, 원료수불서류 미작성·미보관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 거짓작성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서 미작성 / 미보관(6개월)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냉동축산물 해동 후 냉장축산물로 보관 / 판매	
	냉동식육가공업 해동 후 냉장식육가공업으로 판매	
	거래명세서 원산지 거짓표시 발급	
	불량 식용란(식용에 제공할 수 없는 알) 판매	
	허위표시 식용란 판매 / 판매목적 보관	
	도축검사증명서 미보관	
위생교육 미실시(매월 1시간 이상 실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제33조 판매 등의 금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 판매목적 보관

※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시행 [2019. 3. 14.]



식품 분야 주요 위반사례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벌칙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식품용 기계·기구 식기류 미세척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원료보관실 등 내부 위생해충 배설물	
	식품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보존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기준 및 규격 위반(대장균 초과 등)	
	기준 및 규격 위반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자가품질검사 미 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7조 영업허가 등	미등록 영업(식품제조·가공업)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의 변경등록 미 이행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 변경보고 미 이행	4백만원 이하 과태료
	영업의 변경신고 미 이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등)	
제39조 영업 승계	영업자의 지위승계 미 신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40조 건강진단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미 실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제41조 식품위생교육	영업자 및 종업원 위생교육 미 실시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 판매목적 진열·보관 / 가공원료로 사용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생산·작업일지, 원료수불서류 미작성·미보관 / 거짓작성	
	거래기록 미작성·미보관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제52조 영양사	집단급식소 영양사 미배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	벌칙
제4조 표시의 기준	무표시 제품판매 / 판매목적 영업에 사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조원 / 소분원 / 제품명 / 소재지 / 원재료명 미표시 또는 다르게 표시	
	수입판매원 주소 사실과 다르게 기재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영업에 사용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질병예방·치료효능,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인식 우려 표시 또는 광고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다른 업체 및 제품 비방 표시 또는 광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당 비교, 사행심 조장 및 음란한 표현 등의 표시 또는 광고	

※ 제10조(표시기준) 및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제정·시행[2019. 3. 14.(제정 2018. 3. 1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특별사법경찰관 개념 및 역할

사회발전과 분화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식품, 원산지, 환경, 공중위생, 의약, 동물보호, 농약비료 등의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

○ 특별사법경찰관리 : 행정청(도청, 시청 등) 소속 공무원(관할 지검 검사장이 지명)

※ 일반사법경찰관리 :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일반사법경찰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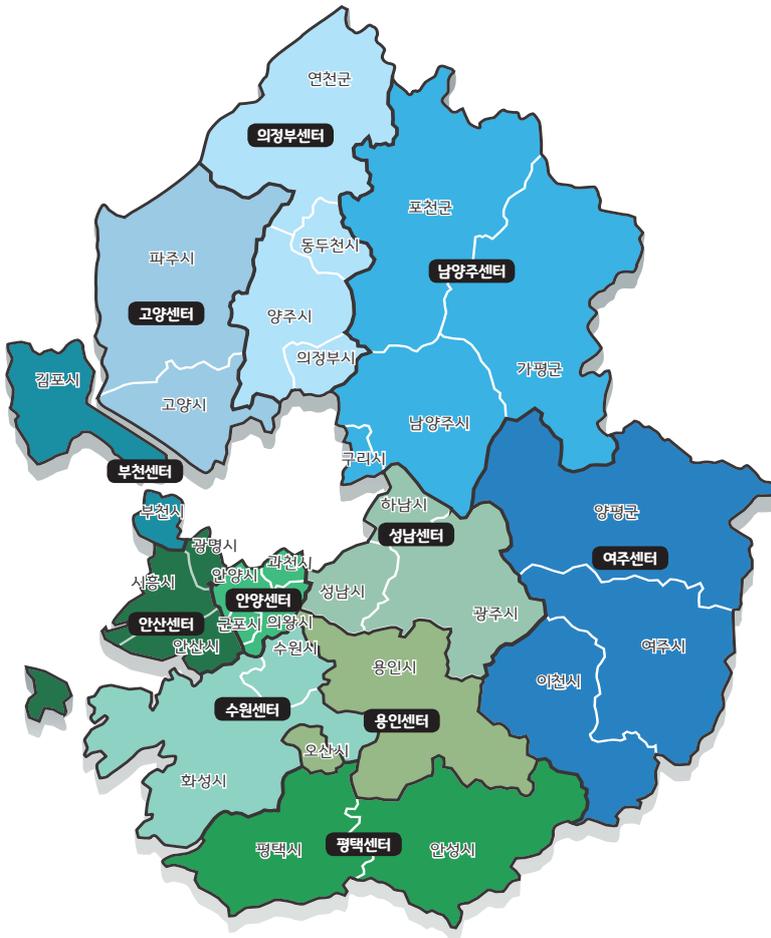
- 수사라는 사법경찰업무를 수행
- 수사상에 있어 검사의 지휘·감독 및 형사소송법의 적용



- 직무의 범위 및 수사관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할 및 연락처



경기도 콜센터 031) 120

수사센터	관할구역	연락처
경기도청	수사1팀	8008-5038
수원	수원, 화성	228-6635
용인	용인, 오산	324-5258
안양	안양, 과천, 의왕, 김포	8045-2927
부천	부천, 김포	(032) 625-7904
성남	성남, 하남, 광주	729-4955
여주	여주, 이천, 양평	887-2765
안산	안산, 시흥, 광명	481-3747
평택	평택, 안성	8024-5933
고양	고양, 파주	8075-9628
의정부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850-5864
남양주	남양주, 구리, 포천, 가평	590-8968

